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967호 2015년 12월 11일(금)

조 례

○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전부개정조례 ····· 4
○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8
○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 고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 14

회 람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35호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맞춤형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을 인용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능 中 수급권자 범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새로이 다층화 된 수급권자 범위 조항이 신설되었고,

나. 같은 법 개정으로 급여특례자 결정기준 소관 부처가 확대됨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 기능 중 동법 인용 조항 개정 필요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36호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저소득주민”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15.7.1부터 맞춤형복지급여가 시행되면서 기존 수급자 범위 조항은 삭제되고 다층화 된 수급자 범위 조항이 신설되어 동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 필요하나,

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는 당연히 수급자가 아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써 수급자 제외 문구는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37호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 계약할 때에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③ “매점”이란 시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전 공고) 속초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

자 및 그 유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5조(신청) 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 등이 정하는 소정 양식)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 등이 정하는 3년 이내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 ·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설치 ·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단체가 해산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산출방법은「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 계약된 매점 및 자동자판기는 계약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개정이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계약에 대하여 생업지원 배려자인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정 · 독립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우선 허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장애인에게만 우선권을 특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대상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38호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속초시 관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민법」·「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 및 발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제5조(유휴공간의 활용)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시장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결정은 ‘속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한다.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및 정산)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7조를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자원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모색하고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여 살고 싶은 정주형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39호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교동)에 둔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반사업”을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출한”을 “제출하였을”로 한다.

제8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또는 훼손한 때”를 “또는 훼손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

항 중 “받아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아니한 때”를 “아니하였을 때”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하고,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개정 후 최초의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 및 위탁 관리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근거와 부합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의 해소차원에서 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정부시책 등에 따른 개선사항의 반영은 물론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 보완과 조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 및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속초시 공고 제 2015 - 785호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85-2번지
3. 공고기간 : 2015. 12. 11. ~ 2015. 12. 25.(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허가(신고)번호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노학동	185-2번지	임	2,286	455	박명종, 신선순	2015-신축신고-86호 (2015. 12. 8.)	건축주 : 김선라, 양인모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비치(열람가능)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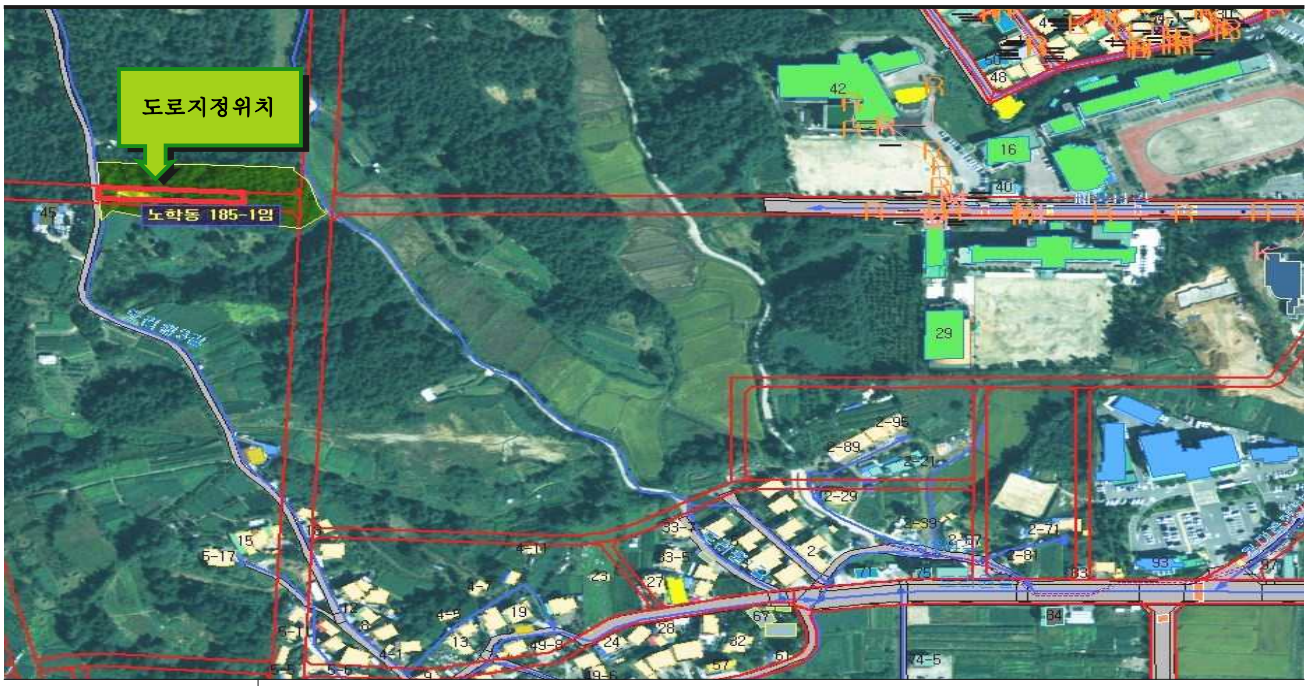

위치도	축 척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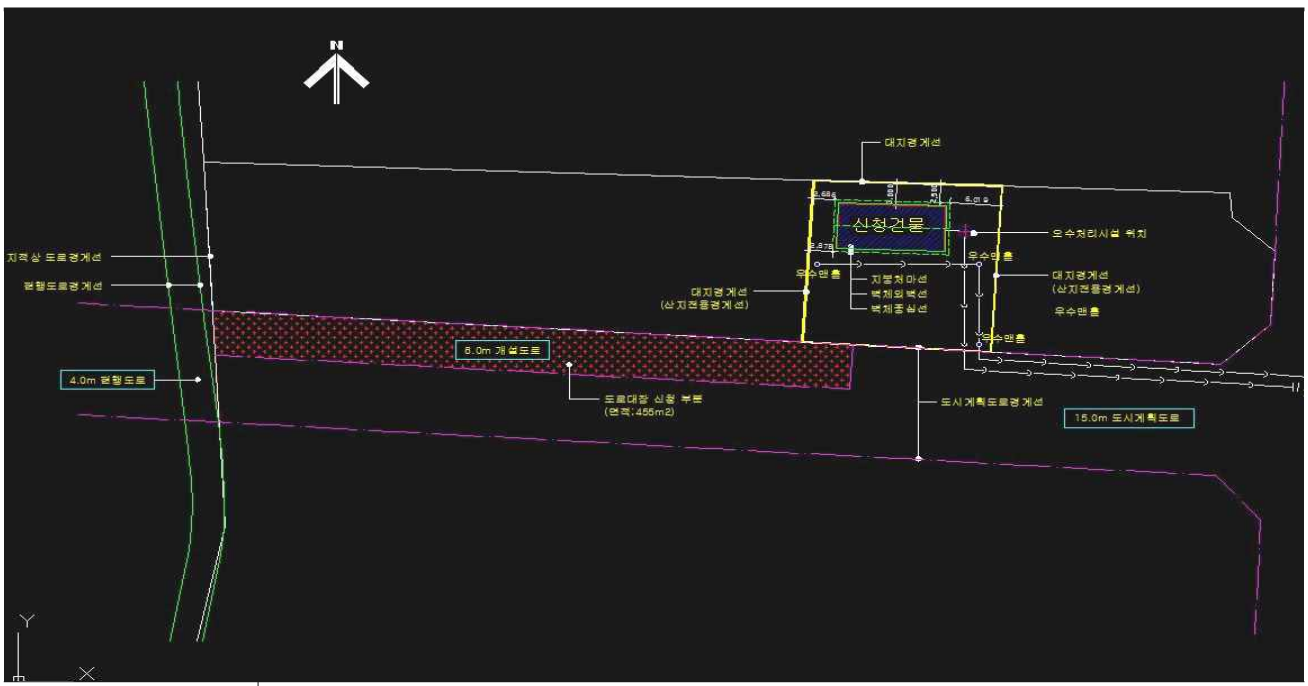

현황도	축 척	NONE